

기업의 노동·인권·환경 실천감독 및 실사 의무 법제화 동향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COVID-19)의 대유행과 현재 겪고 있는 요소수 공급 부족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선명히 보여준다. 21세기의 세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다. 한 국가의 감염병 위기는 곧바로 세계의 방역 위기로 이어진다. 한 국가의 수출 규제나 한 기업의 생산 차질은 다른 국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킨다. 이 상호의존성의 시작과 중심에는 자유무역과 전 지구에 걸쳐 짜인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은 전 세계 곳곳으로 사업을 확장해 공급망을 구축해왔고 국가는 통상협정을 체결해 그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모두에게 이로울 것만 같았던 지구적 경제통합에도 그늘이 있다. 최근의 전지구적 공급망 위기뿐 아니라,¹⁾ 지구적 경제통합은 근원적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축대로 기능하는 동시에 한 국가 내 분배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있다.²⁾ 기업은 자국 시장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상품·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하고 국가도 자국 산업 보호와 해외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기에, 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보호(예: 노동, 인권, 환경, 복지) 강

1) 박용하(2021), 「팬데믹이 불러온 글로벌 공급망 위기...제품·노동자·에너지 '3중고」, 『경향신문』, 10월 3일자 기사, <https://www.khan.co.kr> (검색일: 2021.11.15).

2) ILO(2017), *Handbook on Assessment of Labour Provisions in Trade and Investment Arrangement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1.

화·유지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개별 국가 단위에서 구축된 복지국가 체계를 위협하고,³⁾ 시장에 대한 노동 영역의 민주적 통제장치인 노동조합·단체교섭제도와 최저노동기준 보장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지적도 있다.⁴⁾ 많은 개발도상국이 전지구적 공급망 참여를 개발의 기회로 여기지만 전지구적 분업체제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산업구조의 질적 발전이 제약된다는 관측도 제시된다.⁵⁾ 무엇보다 생산비용을 아끼려는 거대 기업과 느슨한 규제에 해외투자를 유치·유지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맞아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건강이 침해되는 문제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⁶⁾

전지구적 공급망 속 노동문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범지구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 무역·투자의 세계화가 노동과 관련해 불러온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고자 그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개별 국가가 자국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해 타국이 통상 관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근본적 원인으로 이해하는 관점인데, 국가 간 체결한 통상협정에 도입된 “노동조항”이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 예다.⁷⁾ 이에 따르면 오랫동안 국내문제였던 노동은 국제문제와 통상문제가 되어 국가 간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⁸⁾ 다른 하나는 문제의 본질이 전지구적 공급망에 있다고 보고 개별 국가, 특히 선진산업 국가가 자국의 (대)기업에 노동·인권·환경 기준에 대한 실천감독 및 실사에 대한 일정한 의

3) Stone, K. V. W.(2006), “Flexibilization, Globalization, and Privatization : Three Challenges to Labour Rights in Our Time”, *Osgoode Hall Law Journal*, 44(1), 88ff.

4) Bercusson, B. and C. Estlund(2007), *Regulating Labour in the Wake of Globalisation*, Hart Publishing, p.2.

5) 예를 들어 장하준(2004),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6) 이에 대한 극단적이고 상징적 예로 라나플라자(Rana Plaza) 사건을 들 수 있다.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로 1,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 및 이후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The Guardian의 다음 기사들을 참조. <https://www.theguardian.com/world/rana-plaza?page=4>.

7) 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남궁준(2020),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관련 분쟁의 유형과 법적 쟁점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8) 2021년 1월 전문가패널의 보고서가 발표되어 종결된 한국과 EU 간 분쟁이 그 대표적 예이다.

무를 부과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는 대상 기업이 전지구적 공급망에 참여하는 해외지사, 공급업체, 하청기업 등에 대해 법적·사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는 위의 두 번째 유형의 제도를 잇따라 법제화했다. 영국은 2015년 현대 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을 제정해 시행 중이고, 네덜란드는 아동노동에 집중해 자국 기업이 공급망에서 아동노동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담은 법을 도입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호 기획특집에서 소개되는 프랑스의 「모기업 및 대표기업의 실천감독의무에 관한 법」은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기준으로 인권 전반을 대상항목으로 하고, 연례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지우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구속력이 있는 최초의 입법례다. 함께 소개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발전·강화하여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주어지는 제재를 더욱 실효성 있게 다듬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도 회원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망 실사의무 법제화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3월 EU 의회가 관련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실사의무 지침 초안을 준비 중에 있다.

소개된 제도들은 아직 탐색 단계에 있어 국가별로 적용대상, 국제기준, 실사항목과 범위, 의무내용, 제재수단 등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의무의 내용이 구체화되며 위반의 책임이 엄격해지는 것은 분명한 흐름으로 보인다. 유럽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새로운 제도로 인해 사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실천감독·실사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 차질 없이 대비하는 것이 긴요할 것이다. 동시에 한국 정부도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하는 선진국으로서 기업의 노동·인권·환경 실사의무 법제화에 대한 준비를 늦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호 기획특집은 전지구적 공급망 속에 깊숙이 자리한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KLI**